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가천대학교 제4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협의모임, 2022. 10.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총학생회의 선거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적 학생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 선거의 시행)

-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불가항력으로 기존의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공익 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 선거를 시행하거나 온라인 선거 방식과 오프라인 선거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의 이유로 온라인 선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온라인 선거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본 세칙의 규정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결정이 우선한다.
- 본 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과 학생회 선거, 중앙동아리 연합회 선거가 총학생회 선거와 선거의 절차를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동아리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방역수칙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수칙이 본 세칙에 우선하며 국가수칙을 위반한 일체의 선거활동은 본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가수칙의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본 세칙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총학생회 선거의 적용법규) 총학생회 선거에 관하여 본 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총학생회 회칙'에 의하며, '총학생회 회칙'에 정함이 없으면 '가천대학교 학칙'에 의한다. 단, '가천대학교 학칙'에도 정함이 없으면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선거 조력)

- 가천대학교는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천대학교는 총학생회의 선거를 위한 학생자치기구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선관위'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 '부위원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 '위원'이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두를 말한다.
- '정부 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후보자'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 후보자와 부후보자를 말한다.

6. '선본'이란 선거운동본부를 말한다.
7. '선본원'이란 정부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본부 운동원 모두를 말한다.
8. '총선본장'이란 총선거운동본부장을 말한다.

제2장 선거 규정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2인씩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시기) 중선관위는 선거 개시 40일 전까지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제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선거의 진행을 총지휘하고 중선관위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 부재 시 대리인은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의 부재 시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① 중선관위 구성원은 본 위원회 이외에는 동아리를 제외한 일체의 교내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 위원회의 구성 전에 소속된 학생자치기구 및 직책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구성 이후 지체없이 휴직 또는 사퇴하여야 한다.
- ② 본 조 제1항의 휴직 및 사퇴를 하는 경우 각 위원은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과 각 소속 단과대학 게시판에 휴직 또는 사퇴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휴직 또는 사퇴를 한 자는 해당 기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④ 각 위원은 중선관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선관위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한다.
 1. 교외 패용
 2. 중선관위 업무 외 교내 패용
- ⑤ 위원 명찰에 직인을 압날 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직인이 압날된 명찰만 패용할 수 있다.
- ⑥ 각 위원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부)학생회장 및 중앙동아리연합회의 (부)연합회장으로 입후보 및 선거본부 구성원으로 중선관위 활동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퇴 및 해산)

- ① 중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후 중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선거가 시행된 학기 종강 전에 해산한다.
- ② 위원의 사퇴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중선관위의 회의를 고의로 불참하거나 중선관위의 운영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시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사퇴시킬 수 있다.
- ③ 중선관위에서 사퇴하는 위원은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과 각 소속 단과대학 게시판에 휴직 또는 사퇴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중선관위 직인이 압날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권한)

- ① 중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유인물, 벽보 및 온라인 게시물 작성
 3. 선거홍보용 유인물, 벽보 및 온라인 게시물 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5. 선거관리에 필요한 요원의 선발
 6. 선거결과 및 당선 무효여부와 당선인 결정
 7. 선거장소의 질서유지 및 감독
 8. 재투표 여부의 결정
 9.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의 선언
 10. 본 세칙의 준수를 거부하는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 자격의 미부여 또는 박탈
 11.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온라인 홍보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 있는 계정에 대한 검사 및 정지명령 권한
- ② 위원의 출입제한구역은 없으나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 ③ 선거활동 중 문제 발생시, 각 총선본장만이 중선관위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선관위 및 각 총선본장 임시 소집을 통해 결정한다. 단, 소집 요청 거부 시 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공고 기준)

- ① 중선관위의 공고문은 7일 이상 단과대학 게시판과 온라인 게시물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선관위의 온-오프라인 게시물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공고문은 중선관위 직인이 압날되어 게시된 경우에 유효하다.
- ③ 선본은 중선관위의 공고문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변형 또는 훼손할 수 없다. 다만, 공고문이 게시된 장소에 대해 권한 있는 자가 공고문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중선관위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가천대학교 재학생이 중선관위의 공고문을 훼손하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선거 방법

제13조(총학생회 정부회장)

- ① 총학생회 정부 후보자는 선거의 전 과정에 하나로 참여하고 전 유권자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한다.
- ② 단선일 경우 당선자는 투표율이 33.3% 이상일 때,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당선 유효 투표율은 시행세칙협의모임 및 중선관위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 ④ 경선일 경우 당선자는 투표율이 33.3% 이상일 때, 총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4조(총학생회 정부회장 등록)

- ① 총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중선관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② 등록 구비서류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명함판 사진 각 2부
 2. 직책이 명시된 운동원 명단 및 운동원의 재학증명서
 3. 총선본장에 대한 위임장

4. 중선관위 포스터용 정책 1부

5. USB형식의 리플렛과 정책 자료집

- ③ 제출되는 모든 등록 구비서류는 선본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공동회의모임을 통해서 중선관위와 다른 후보 측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내용 및 디자인 상의 변경이 없는 단순 오탈자 수정, 순서 변경, 단순 삭제 등은 공동회의모임 없이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추천인 서명은 본 세칙에서 정하는 유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인 수는 18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후보등록 추천인 수는 시행세칙협의모임 및 중선관위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 ⑥ 추천서는 후보등록이 끝난 후 추천서 제출기간에 제출하도록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추천인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후보등록을 취소한다. 다만,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추천인 서명의 수가 18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선본은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⑦ 오프라인 추천인 서명의 요청은 중선관위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⑧ 중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추천인 서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방식과 절차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 ⑨ 온라인 추천인 서명 방식을 진행하는 경우, 각 선본은 추천서 제출기간 이전 1회에 한하여 중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오프라인 추천서 집계현황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천인 명부 집계현황 문의를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⑩ 입후보자는 중선관위가 각 등록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총선본장에게 가등록의 완료를 공지한 때부터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며, 중선관위가 제출된 추천서를 검토한 후 총선본장에게 본 등록의 완료를 공지한 때에 본등록이 완료된다.
- ⑪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연한에 따른 잔여학기가 임기 2개 학기 이상인 자, 평균 평점 2.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건축학과는 3,4학년,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의학과(본과) 1,2,3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 ⑫ 경선일 경우 각 후보자의 선거 기호의 결정은 추첨에 따른다.

제15조(선거 운동)

- ① 선거운동은 공정하고 본 세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신문 및 방송을 통한 공동홍보
 2. 연설
 3. 전단, 게시판, 현수막
 4. 온라인 홍보
-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유권자)

- ① 유권자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휴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는 제외한다.
- ② 선거인 명부가 필요한 경우 투표개시 4일 전까지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시에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유권자 명단을 개설하는 것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을 갈음한다.
- ③ 온라인 선거 시 유권자 선정의 기준일은 투표기간 개시 7일 전의 기간 내에서 중선관위가 정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공고)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의 18:00까지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 및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각 후보자의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일 공고) 중선관위는 투표개시 3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게시판과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19조(선거 기간)

- ① 선거 기간은 선거일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4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보궐선거 또는 재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간은 분리하여 정할 수 없고 연달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개회 및 결의) 중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온라인 선거의 방식) 온라인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선거에 이용할 프로그램 및 절차와 방식에 관한 사항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온라인 선거의 투표 및 개표) 온라인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는 중선관위가 지정한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의한다.

제23조(당선 공고)

- ① 중선관위는 개표 결과 발표 후 이를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에 공고하고, 공고 후 1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중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당선 공고를 한다.
- ② 당선 공고는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과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한다.

제24조(이의제기)

- ① 선거결과, 선거시행세칙 변경, 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 신청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투표 및 개표 과정 및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선거시행 세칙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시행세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다.
- ④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개표 결과 발표 후 12시간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선거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 공고일 기준 익일 09:00 ~ 18:00 이내에 제소해야 한다. 단, 금요일 또는 주말에 변경된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 09:00 ~ 18:00로 지정한다.
- ⑤ 선거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중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 ⑥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의 익일 18:00까지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징계

제25조(제재조치)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1. 본 세칙 또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상대방 후보자 혹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3. 홍보에 관한 규정 및 결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경우
 4. 중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6. 공동회의모임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
- ② 중선관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로 나누어 제재할 수 있으며 주의 3회 누적 시 경고 1회 처리한다.
- ③ 주의 조치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④ 주의는 위원의 제기로 위원장이 내릴 수 있고 경고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내린다.
- ⑤ 선분이 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또는 3회의 주의 조치로 1회 경고 처리된 경우에 중선관위는 주의 혹은 경고 조치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 및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본 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행위를 하는 재학생에 대하여 중선관위는 가천대학교와 협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후보자격 박탈)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1. 3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2. 중선관위의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경우
- ② 선거 기간 내 선거와 관련한 가천대학교 학칙, 총학생회 회칙, 본 세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경중을 가려 중선관위의 결정을 거친 후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모임 규정

제1절 시행세칙협의모임

제27조(시행세칙협의모임의 구성)

- ① 시행세칙협의모임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구로서 중선관위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행세칙협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시행세칙의 신설, 개정, 삭제 등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시행세칙협의모임은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당선 공고 시까지 개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보 등록 개시일 이후 최대 1회 재적위원의 3/4 이상의 찬성과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세칙협의모임의 역할)

- ① 시행세칙협의모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시행세칙협의모임은 12시간 전에 모든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소집할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행세칙협의모임이 결정된 이후에는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행세칙협의모임을 공지하며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행세칙협의모임에 참관할 수 있다. 단, 시행세칙협의모임 공지 시에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세칙협의모임을 통해 선거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시행세칙협의모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익일 18:00까지 중선거관위 온라인 계정과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온라인 시행세칙협의모임)

- 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오프라인 시행세칙협의모임을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온라인 시행세칙협의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시행세칙협의모임의 소집에 이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위원장이 정하며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③ 온라인 시행세칙협의모임은 1시간 전에 모든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소집이 결정된 이후에는 단과대학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시행세칙협의모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조는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회의모임

제30조(공동회의모임의 구성) 공동회의모임은 선거를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총선본장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참관인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공동회의모임의 역할)

- ① 공동회의모임은 중선거관위가 제시한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하거나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 ② 공동회의모임의 소집은 위원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③ 각 총선본장이 공동회의모임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기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동회의모임이 소집될 수 있다.
- ④ 위원장의 공동회의모임 소집 통보를 받고도 총선본장이 불참한 경우 선본은 이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문제제기는 반드시 총선본장을 통해서 중선거관위로 제기할 수 있다. 단, 문제제기 시간은 09:00~18:00 로 제한하며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승낙하는 경우 당일 20:00에 공동회의모임을 소집한다
- ⑥ 문제제기를 신청한 총선본장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 ⑦ 공동회의모임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는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32조(온라인 공동회의모임)

- 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오프라인 공동회의모임을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각 총선본장과 위원장 모두의 동의로 온라인 공동회의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공동회의모임의 소집에 이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위원장이 정하며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③ 본 조는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준용한다.

제3절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제33조(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운영위원회(이하 '선운위'라 칭함)는 총학생회 및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4조(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역할)

- ① 선운위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의 방식과 일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선관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운위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중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의사와 소집 사유를 전달하고 중선관위 위원장은 선운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선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선운위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문제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선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운위에서 학과 선거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 선거에 관한 결정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35조(온라인 선거관리운영위원회)

- 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오프라인 선운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선운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온라인 선운위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선운위의 소집에 이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중선관위 위원장이 정한다.
- ③ 본 조는 제33조, 제34조를 준용한다.

제4장 홍보 규정

제1절 오프라인 홍보

제36조(오프라인 홍보)

- ① 홍보와 관련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실 연설'이란 정부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 유세를 위해 교내 강의실에서 하는 연설을 말한다.
 2. '복도 연설'이란 정부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 유세를 위해 교내 건물 복도 등에서 하는 연설을 말한다.
 3. '홍보물 부착'이란 선본이 교내에 중선관위가 허용한 장소에 선거를 위해 필요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외 연설'이란 정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건물 내를 제외한 교내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울동 유세'란 로고송 및 울동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홍보물 배포행위'란 정책 자료집, 기타 리플렛 등을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외 선거운동'이란 실외 연설, 울동 유세, 실외에서의 홍보물 배포행위 등 선본이 선거를 위해 행하는 교내에서의 선거운동을 말한다.
 8. '실내 선거운동'이란 강의실 연설, 복도 연설, 실내에서의 홍보물 배포행위 등 선본이 선거를 위해 행하는 교내 건물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말한다.
- ② 홍보 시간은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 매일 08:00 ~ 20:00로 제한한다. 단, 온라인 홍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오프라인 홍보물 및 온라인 홍보물은 본 조 제2항의 홍보 시간과 같은 시간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 ④ 온라인 홍보물을 제외하고 걸개 또는 창의적인 홍보물 등 설치에 긴 시간이 필요한 홍보물은 공동회의모임합의 하에 홍보 시간 외 또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게재할 수 있다.
- ⑤ 실내 선거운동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 가능하며 강의실 연설은 교수님과 학생의 동의 하에 쉬는 시간에 가능하다.
- ⑥ 실내 선거운동은 중선관위에 사전보고 및 승인 후 가능하며 위원 1인 참관 하에 진행해야 한다.
- ⑦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본 조 제7항의 이유로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실외 및 실내 연설의 장소, 운동 인원, 운동 시간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7조(오프라인 홍보물)

- ① 선전내용 없이 이름, 사진만을 홍보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 ② 선거 관련된 홍보물로서 명의를 없거나 불확실한 홍보물은 중선관위만 제거할 수 있다.
- ③ 홍보물 대자보는 각 선본 당 100부로 제한하고 그 중 색지 대자보(이하 '색지'라고 칭함)는 50부 이하로 제한하며 중선관위 직인이 있어야 한다. 단, 대자보나 색지는 용도를 정하여야 하며 색지의 색상은 띠를 포함하여 5가지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대자보 대형 복사의 경우 색지 대자보의 출력을 금하고 흰색 대자보 출력 시 흑색을 제외한 1색을 허용하며 색상의 사용은 색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⑤ 띠를 포함한 덧붙여지는 출력물은 대자보와 하나로 인식하여 50%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색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⑥ 대자보 연속 부착 시 최대 크기는 가로 3장 또는 세로 2장으로 하며 이를 대자보 1부로 본다.
- ⑦ 실내의 경우 복도와 전용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을 허용한다. 단, 총선본장들은 단과대학 게시판 및 학과 전용게시판의 사용 시 각 기구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기구의 요청 시 부착물을 이동하여야 한다.
- ⑧ 각 건물의 출입구 쪽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공약선전을 할 수 있으며 입간판 개수는 각 교내 가용 입간판 개수와 위치에 따라 각 선본과 중선관위의 협의로 개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 ⑨ 부착용 홍보물에 풀 사용을 허용한다.
- ⑩ 대자보 및 포스터 부착 시 유리테이프로만 가능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붙인다.
- ⑪ 사진은 정부 부 후보자만의 얼굴이 들어가되,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동일 인물이 중복될 수 없다. 후보자 사진은 약력선전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사진크기는 가로 20cm X 세로 30cm 이내로 제한한다.
- ⑫ 사진은 색지에 관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 ⑬ 부착할 홍보물은 중선관위가 정하는 날짜에 직인을 압날하고 홍보물 번호를 부여받은 후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된 홍보물은 투표개시 전 날 21:00까지 전부 회수해야 한다.
- ⑭ 홍보물 대자보 및 포스터 부착 시 중선관위가 지정한 위치에만 부착 가능하며 경선 시에는 기호에 맞추어 진행한다.
- ⑮ 홍보물을 훼손한 자가 선본원일 경우 해당 선본에 대하여 1, 2차 경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38조(포스터정책자료집)

- ① 후보 포스터는 중선관위의 각 선본에서 중선관위의 규정 내에서 제작하며 매수는 각 선본당 100장으로 한다. 단, 중선관위 인증마크가 필히 있어야 한다.
- ② 포스터 크기는 4절지 크기로 하며 연속 부착은 10장 이하로 제한한다.
- ③ 정책 자료집은 각 선본 당 1가지로 제한하며 부수는 3000부 이하로 한다.
- ④ 정책 자료집 및 모든 홍보물은 중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전심의를 통과한 후 배포한다.
- ⑤ 정책 자료집 내지의 장수에는 제한이 없고 크기는 A4 이내로 제작한다. 단, 종이의 종류에

있어서 내외지 모두 아트지, 모조지, 스노우지, 미색모조지 모두 150g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 ⑥ 리플렛은 A4이내 크기, 무게는 150g이하, 부수는 6000부로 제한한다. 단, 색상의 사용은 허가한다.
- ⑦ 포스터 외 인쇄물은 정책 자료집, 리플렛만을 허용한다.
- ⑧ 기타 홍보물의 내용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현수막)

- ① 현수막은 각 선분당 최대 3개씩 제작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위치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하며 크기는 0.9m×10m이어야 한다.
- ② 걸개는 각 선분당 1개씩 제작할 수 있으며 최대 크기는 10m×10m로 하고 위치는 중선관위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단, 걸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선관위는 사전에 가천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선전선동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창의적인 홍보물)

- ① 창의적인 홍보물은 1가지로 제한한다. 다만, 영상물과 평면 형태의 홍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만국기는 불허한다.
- ③ 창의적인 홍보물 제작 비용의 총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며 대여비를 이에 포함한다. 단, 사적인 대여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는 대여비를 측정하여 총액에 포함시킨다.
- ④ 창의적인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구매 및 대여에 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홍보기간 내에 중선관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보조 도구)

- ① 페인트칠 및 스프레이, 청 테이프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 ② 피켓은 선거운동 소품으로 인정하여 창조적인 홍보물로 보지 않고 A2이하의 크기와 10개 이하로 제한을 둔다. 다만, 다른 소품은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소품과 창조물로 구분한다.
- ③ 선분 유니폼으로 이용할 티셔츠, 모자, 목도리, 장갑, 신발 등은 창조적 홍보물로 보지 않고 색은 로고를 제외한 3가지 이내로 허용한다.
- ④ 각 건물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연설에 이용하는 스피커의 출력량은 800W 이내로 제한하며 출력 시간은 08:00 ~ 10:00, 12:00 ~ 14:00, 16:00 ~ 18:00로 제한한다.
- ⑤ 중앙도서관 및 글로벌 센터에서의 홍보는 각 선분에 입간판 1개씩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기타 여하의 홍보물을 배포 및 게재할 수 없다.

제2절 온라인 홍보

제42조(온라인 홍보)

- ① 온라인 홍보와 관련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휘발성 게시글'이란 일정 시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시글을 말한다.
 - 2. '지속성 게시글'이란 작성자가 삭제하거나, 신고 누적 등의 이유로 플랫폼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게시글을 말한다.
 - 3. '메세지 송신행위'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세지를 송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메세지 송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한 플랫폼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 4. '의사표현 행위'란 온라인 공간에서의 논쟁, 답변 등을 말한다.
 - 5. '게시물 간접반응'이란 게시물에 대한 표현행위를 말한다. 단, 의사표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게시물 전파'란 특정 플랫폼 내에서 원본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 원본 게시물은 지속성 게시물에 한정된다.

7. '특정인 지칭'이란 게시물에 타인의 온라인 계정 등을 명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유료 광고'란 광고비를 지불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내용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9. '창의적인 홍보물'이란 텍스트, 이미지, 영상물을 제외한 모든 홍보물을 말한다.

10. '양방향성 홍보물'이란 게시자와 상대방이 소통 가능한 일체의 매체를 말한다.

11. '플랫폼'이란 선거 홍보에 이용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말하며 이 외의 플랫폼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각 선본은 중선관위가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선전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에 사용되는 플랫폼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홍보에 사용된 계정 및 온라인 홍보물은 선거운동기간의 마지막 날 21:00까지 폐쇄 또는 삭제한다. 단, 개인 계정은 삭제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계정은 각 플랫폼 당 대표 계정 1개와 정후보자, 부후보자, 총선본장의 개인 계정 각 1개씩으로 총 8개로 제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중선관위는 선본원 개인계정의 사용이나 허용되는 온라인 홍보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게시물의 허용범위는 지속성 게시물로 제한한다.

⑥ 유료광고는 각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⑦ 메시지 송신 행위는 중선관위에서 허용한 계정과 내용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추천인 서명 발송의 경우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시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⑧ 게시물 전파, 의사표현 행위, 특정 지칭은 중선관위에서 허용한 계정으로 제한한다.

⑨ 게시물 간접반응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⑩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선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⑪ 각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운동에 사용될 계정 및 주소를 중선관위에 신고하며 신고된 공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 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⑫ 각 선본의 계정에 게시되는 사진과 게시글은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뒤 게시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⑬ 승인된 계정 이외의 사용, 선거운동기간 외의 메시지 송신 등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제보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는 총선본장 입회 하에 의심되는 자에 대한 대면 조사, 계정열람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⑭ 중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계정 별로 전항 각 호의 내용 이외의 이용방법 또는 제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온라인 홍보물)

① 온라인 홍보물은 중선관위가 허가한 홍보물로 제한하며 온라인 홍보물은 게시 12시간 전까지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온라인 홍보물의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 시점은 온라인 홍보물을 중선관위에 제출한 시점으로 간주한다.

③ 선본이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홍보물은 중선관위 인증마크의 표시를 받아야 한다. 단, 중선관위 인증마크의 표시를 함으로써 홍보물 형태의 변형이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유권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중선관위 인증마크를 복제 또는 수정하여 허가 받지 않고 선거에 이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⑤ 온라인 홍보물은 중선관위에서 허용한 계정에 한하여 게시한다.

- ⑥ 온라인 홍보물의 개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⑦ 창조적인 홍보물의 경우 양방향성 홍보물은 일체 금지한다.
- ⑧ 홍보물 내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정적인 문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⑨ 게시된 온라인 홍보물은 선거운동기간의 마지막 날 21:00까지 모두 삭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 ⑩ 오프라인 홍보물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에 사용할 플랫폼과 배포의 대상에 대해서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과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온라인 홍보물로 간주한다.
- ⑪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홍보물이 게시된 후 중선관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남김 없이 제거해야 한다.
- ⑫ 국영, 사영, 학교 및 개인 운영의 모든 온라인 페이지에서 선본은 중선관위 승인 없이 어떠한 게재도 할 수 없으며,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허용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페이지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거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⑬ 오프라인 홍보물의 온라인 배포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은 온라인 홍보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절 선거 운동

제44조(연설)

- ① 후보자의 연설 시 지지연설은 없다.
- ② 실외 연설은 정부 후보자가 한 팀으로, 선전 및 구호를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한다.
- ③ 각 후보자는 약속한 연설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며 연설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후보자가 오지 않는 경우 연설 포기로 간주한다.
- ④ 연설 시간 중 다른 선본의 선전선동을 금지하며 중선관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연설자격을 박탈한다.
- ⑤ 강의 시간 전후 후보자들의 강의실 연설을 허용하되 수업 시작 3분전에는 연설을 마무리해야 한다.
- ⑥ 우천 시 학교사정에 따라 연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제3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실외 연설이 금지된 경우 비대면 방식의 연설로 갈음한다.
- ⑧ 비대면 연설에 이용할 프로그램의 선택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 ⑨ 비대면 연설을 진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오류로 연설 시간이 지체된 경우 지체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 ⑩ 기타 비대면 연설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사항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제45조(홍보장소 및 운동원)

- ① 각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중선관위의 내규와 결정을 따라야 한다.
- ② 총학생회실 및 단과대학 학생회실, 학과 스터디 룸, 언론사, 동아리실에 대하여 모든 선본원의 출입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선거본부 운동원 인원수는 60명 이내로 제한한다.
- ④ 총학생회, 교내 언론사,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단체장, 구성원 및 간부장학금 수혜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운동원의 활동을 원할 시에는 휴직 혹은 사퇴를 하여야 한다.
- ⑤ 본 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휴직 또는 사퇴를 한 자는 휴직 또는 사퇴한 해당 기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⑥ 본 조 제4항의 휴직 및 사퇴를 하는 경우 각 선본원은 소속 단과대학 게시판에 휴직 또는 사퇴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⑦ 선본원은 일반학생으로서 학생자치기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 단, 선본의 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⑧ 선본원의 자격은 현재 재학생이어야 한다.

제46조(선거 비용) 각 후보자에 대한 가천대학교 측의 선거비용 지원은 일절 없다.

제47조(분쟁해결)

- ① 선거와 관련하여 각 선본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총선본장의 협의로 해결한다.
- ② 총선본장 간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동회의모임에서 해결한다.
- ③ 각 총선본장은 분쟁해결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 ④ 선본인원의 총원 및 사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중선관위에 보고한 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⑤ 선본원의 총원 및 사퇴는 중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각 단과대학 게시판 및 해당 선본의 온라인 계정에 총원 및 사퇴의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8조(선본 명찰)

- ① 각 선본원은 추천서 제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한다.
 - 1. 교외 패용
 - 2. 선거운동시간 외의 교내 패용
 - 3. 기숙사 건물 내부,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에서의 패용
- ② 사전에 보고된 실내 선거운동 및 연설의 경우 위원 1인의 참관 하에 명찰 패용을 허용한다.
- ③ 각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명찰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허가한 명찰에 직인을 압날한다.
- ⑤ 각 선본은 중선관위의 허락을 받아 직인이 압날된 명찰만 패용할 수 있다.

제49조(선본 유니폼)

- ① 각 선본원은 추천서 제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에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본 유니폼 착용을 금지한다.
 - 1. 교외 착용
 - 2. 선거운동시간 외 교내 착용
 - 3. 기숙사 건물 내부,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에서 유니폼 착용
- ② 사전에 보고된 실내 선거운동 및 연설의 경우 위원 1인 참관 하에 유니폼 착용을 허용한다.
- ③ 각 선본원은 현재 소속된 선본의 유니폼 외에 총학생회, 단과대학 및 과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기구의 유니폼 등 특정 집단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규정

제50조(투표 기간)

- ① 투표일시는 중선관위가 정하는 투표기간 매일 각 10:00 ~ 18:00로 한다. 단, 야간대학이 속해 있는 단과대학의 경우 10:00 ~ 20:00, 투표기간 마지막 날은 10:00 ~ 18:00로 한다.
- ②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일시는 투표기간 개시일 09:00부터 투표기간 종료일

18:00까지로 한다.

- ③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다만,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선관위는 투표기간을 4일로 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불가항력으로 기존의 투표 시간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공익 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 시간에 대하여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51조(투표 장소)

- ① 오프라인 선거 시 투표장소는 각 단과대학 건물에 설치 및 운영하며 위치는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투표 장소 주변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중선관위가 정하는 투표 장소 일정 반경 내에는 후보자가 접근할 수 없다.
- ③ 선본원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유권자를 투표장에 데려오는 등의 강제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 ④ 온라인 선거 시 투표장소는 유권자가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장소로 한다.

제52조(오프라인 투표 방법)

- ① 투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참관인이 투표 용지의 교부 및 투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실시한다.
- ③ 투표하려는 자는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종 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제한한다.
- ④ 투표자는 중선관위의 확인을 거친 후 위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로 들어간다.
- ⑤ 기표소에 들어간 투표자가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음으로써 투표가 종료된다.
- ⑥ 기표소에는 투표자 1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제53조(온라인 투표 방법)

- ①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확인 절차는 해당 시스템의 유권자 확인 절차에 따른다.
- ② 투표에 관한 전 과정은 중선관위가 지정하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방법에 따른다.

제54조(투표장 참관인)

- ① 각 투표장에는 각 선본 당 1인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은 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참관 및 주시할 의무가 있다.
- ③ 참관인은 지지 후보에 대한 선전, 타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으며 중선관위의 허락 없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없다.

제55조(투표 장소의 질서유지)

- ① 중선관위는 투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장 주변의 특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참관인을 제외하고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② 중선관위는 투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56조(오프라인 선거에서의 유효한 투표)

- ① 유권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교부된 정규 투표용지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투표는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한다.
 - 1. 중선거관위 직인과 검인을 갖춘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2. 백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3. 중복투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표기를 하여 제출한 경우
 - 4. 투표용지에 표기가 불분명한 경우
 - 5. 중선거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 외의 것으로 표기된 경우
 - 6.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이 아닌 타 투표함에 용지가 들어있는 경우
 - 7. 여러 칸에 걸쳐지거나 정해진 한 칸 안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③ 본 조 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57조(온라인 선거시스템에서의 유효한 투표)

- ① 모든 유권자는 총학생회 선거,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과 학생회 선거에 대하여 가천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계정 당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본인의 계정으로 직접 온라인 선거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표로 한다.
 - 1. 중복투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표기를 하여 제출한 경우
 - 2. 백표로서 투표지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3. 기권표로서 기권 항목에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 ③ 중복투표 및 백표, 기권표 제출의 가능 여부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선거관위의 결정으로 한다.
- ④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종료한 경우 투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⑤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사정으로 투표지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완료되었음에도 투표의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의 상실 여부는 중선거관위의 결정으로 한다.

제58조(온라인 투표)

- ① 고의로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해킹하거나 서버를 과부하 시킬 의도로 반복 접속하는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선거를 방해하는 등 온라인 선거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선본원은 기타 온라인투표를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투표장소와 근접한 곳에 선본원이 있는 경우 또는 투표를 행하는 유권자와 선본원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투표장소에서 공정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에 대해 중선거관위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거나 그 오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선거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개표 규정

제59조(오프라인 선거에서의 개표)

-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개표 장소에 모든 투표함이 집결된 후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위원장의 개표 시작 선언으로 시작한다.
- ② 개표장은 교내에 한하여 중선거관위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
- ③ 개표장에는 중선거관위 위원, 후보자를 포함한 각 선본 참관인 6인, 4대 언론사 각 2인,

규찰대만 출입할 수 있다.

- ④ 개표장의 모든 참석자는 중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4대 언론사 이외에는 취재를 할 수 없으며, 언론사 당 지정된 1인만이 촬영을 할 수 있다.
- ⑥ 개표장 내 모든 취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⑦ 개표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해 개표장소 내 모든 참석자는 중선관위의 통제에 따른다.
- ⑧ 허가되지 않은 전자 및 통신기기의 반입을 금하며, 소지가 적발된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해당 위반자를 추방할 수 있다.

제60조(온라인 선거에서의 개표)

-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개표 장소에서 개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위원장의 개표 시작 선언으로 시작한다.
- ② 개표 장소는 온라인선거시스템으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중선관위가 정한다.
- ③ 온라인 선거 시 개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위원, 각 후보자를 포함한 참관인 6인, 4대 언론사 각 2인, 규찰대,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한한다.
- ④ 본 조는 제59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준용한다.

제61조(오프라인 선거에서의 개표 과정)

- ① 개표는 유권자 수가 적은 곳의 투표함을 우선하여 차례대로 개표한다.
- ② 개표 시 장내를 소란케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퇴장시킨 후 개표를 계속한다.
- ③ 개봉한 투표함의 개표 완료 후 중간발표를 한다.
- ④ 개표 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검표참관인인 각 선본의 총선본장이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표를 중단하고 위원장의 최종 결정 후 개표를 속개한다.
- ⑤ 참관인과 4대 언론사는 투표용지를 만질 수 없으며 개함 시를 제외하고는 중선관위가 정하는 개표 반경 내에 접근할 수 없다.
- ⑥ 참관인과 4대 언론사는 개표 중인 위원에게 말을 걸 수 없으며 대화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겐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 하에 대화 가능하다.

제62조(온라인 선거에서의 개표 과정)

- ① 개표는 지정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일시에 한다.
- ② 참관인과 4대 언론사는 온라인 선거시스템 개표에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만질 수 없으며 중선관위가 정하는 개표장소 반경 내에 접근할 수 없다.
- ③ 참관인과 4대 언론사는 개표 중인 위원에게 말을 걸 수 없으며 대화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겐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 하에 대화 가능하다.
- ④ 개표완료가 있기 전까지 개표결과의 내용을 유포 및 발설해서는 안된다.
- ⑤ 본 조는 제61조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개표 완료)

- ① 위원장의 최종 개표결과 발표 및 완료 선언으로 개표는 완료된다.
- ② 세척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선거 일정을 마친다.
- ③ 당선증 교부는 당선 공고 후 중선관위의 일정에 따른다.

제64조(당선의 경합 및 결정)

- ① 단선의 경우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인 경우 당선된다.
- ②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최다 득표자의 당선이 중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차 득표자가 당선된다.
- ③ 최다 득표자가 둘일 경우에는 동표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65조(투표율 및 오차율)

- ① 투표율은 (전 학년 투표자 수)/(내국인 졸업 학년 외 유권자 수 + 내국인 졸업 학년 투표자 수 + 외국인 투표자 수)
- ② 오차율은 (유실표 수)/(총 투표자 수)*100으로 계산한다.
- ③ 유실표 수는 (총 투표자 수 - 총 투표용지 수)로 계산한다.

제66조(재투표)

- ① 오프라인 선거 시 다음과 같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당선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1. 전체 투표율이 33.3% 미만일 경우
 2. 무효표가 전체 투표율의 과반수인 경우
 3. 제65조 제2항의 오차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4. 단선에서 유실표가 찬성과 반대의 표차보다 큰 경우
 5. 경선에서 유실표가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의 표차보다 큰 경우
- ② 온라인 선거 시 다음과 같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당선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1. 전체 투표율이 33.3% 미만일 경우
 2. 무효표가 전체 투표율의 과반수인 경우
 3.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온라인 선거시스템 오류로 투표 및 개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재보궐선거 규정

제67조(재보궐선거의 중선관위 구성) 중선관위는 당해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68조(구성의 시기) 중선관위는 선거 개시 20일 전까지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제69조(재보궐선거의 시행) 본 세칙에 따라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등록된 후보가 없어 총학생회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시행한다.

제70조(재보궐선거일 공고) 중선관위는 선거가 시행된 학기 종강 7일 전에 각 단과대학 게시판과 중선관위 온라인 계정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71조(재보궐선거의 총학생회 정부회장 등록) 재보궐선거에서 정부 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4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 연한에 따른 잔여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평균 학점 2.5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건축학과는 4,5학년, 한의과대학의 경우 한의학과(본과) 2,3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제72조(준용 규정) 재보궐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본 장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장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용한다.

-가천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첨>

<총학생회 회칙 中>

제38조(선출)

- 1) 총(부총)학생회장은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한다.
- 2) 총(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 자격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학칙에 반하지 않는자로 한다. (07. 3. 21. 학운위 결정) [단, 재·보궐 선거에 한하여 총(부)학생회장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4학년(건축학과 4.5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연한에 따른 잔여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평균 평점 2.5이상인자로 한다. 이 내용은 학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1. 30)
- 3) 총(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4) 당선자는 경선일 경우 총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하며, 단선일 경우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5)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78조 제6항: 중선거위는 선거 시행세칙을 결정하며 본 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제79조(선거시기): 총(부총) 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의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80조(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거위")는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 중선거위장은 중선거위 과반수의 동의로 중선거위 중 1인을 선출한다.
- 3) 단과대학 선거위는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4) 동연 선거위는 동연 회칙에 따른다.
- 5) 중선거위는 선거세부시행세칙을 결정하여 본 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 6)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89조(선거시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의 선거는 다음 해 3월 내에 진행한다.

90조(선거관리위원회)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거위")는 당해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중선거위장은 중선거위 과반수의 동의로 중선거위 중 1인을 선출한다.
- 2) 선거일 공고는 직전학기 중강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천대학교 학칙 中>

제81조(총학생회)

③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9.22.,2016.05.24.)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C+)이상인 자
2. 총(부)학생회장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학년(건축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 년한에 따른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해당학기를 포함한다. 다만 메디컬캠퍼스는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2학년 이상인 자. (2019.8.13. 항 개정)
3.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서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4.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임기는 등록을 마친 본교 재학생으로 잔여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자
5. 재학기간 중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금고, 집행유예, 실형 등) 등을 받지 아니한 자
6.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회칙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